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대학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6)

제 2 조 (연구소의 종류 및 기능) 연구소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6., 2017. 6. 20)

1. '기본연구소'라 함은 학문분야가 유사한 전공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 인문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 과학기술융합연구소가 이에 해당한다.
2. '교책연구소'라 함은 학교의 비전과 발전계획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된 연구소를 말한다.
3. '일반연구소'라 함은 기본연구소가 전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학문분야의 대·내외적인 학술활동, 공동연구 및 연구비 획득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를 말한다.
4. '산학연구소'라 함은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기타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특수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연구소를 말한다.

제 3 조 (기능) <삭제 2010.11.16>

제 4 조 (설립신청) ①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다음의 서류를 구비, 소속 단과대학장 및 연구소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5.09.01)

1. 설립취지서
2. 사업계획서(2년간) 및 수지예산서
3. 참여 전임교수 명단 및 교수별 2년간 연구실적과 연구비 규모(단, 참여교원은 기본연구소 1개, 그 외 연구소 2개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4. 연구소의 규정안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안은 <별표1>의 연구소 표준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1>의 표준규정 양식 외의 사항을 신설 하거나 표준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규정 등 관리·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09.01)

1. <삭제 2015.09.01>
2. <삭제 2015.09.01>
3. <삭제 2015.09.01>
4. <삭제 2015.09.01>
5. <삭제 2015.09.01>
6. <삭제 2015.09.01>
7. <삭제 2015.09.01>

제 5 조 (설립기준) 연구소의 설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을 위하여 육성 지원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대외 연구비의 획득,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연구 위상의 격상을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의 내용이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
4.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이 설립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

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삭제 2010.11.16>

6. 연구소 공간은 연구소장의 연구실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신설 2010.11.16, 개정 2015.09.01>

제 6 조 (설립인가) 연구소의 설립인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제 6 조의 1(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11.16>

② 연구간접경비 내규에 따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책연구소에 한하여 대학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6>

③ 연구소의 회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0.11.16>

제 6 조의 2(설립 변경) ① 이미 설립된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소 관리부서로 신청하며, 총장은 연구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09.01)

제 7 조 (운영평가) ① 부설연구소의 기능과 운영, 연구 활동 등의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8.5.19, 2010.11.16, 2015.09.01)

② 부설연구소의 소관부처장은 연구소에 대하여 매년 예산집행과 사업결과 등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도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5.19, 2015.09.01)

③ 대학의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연구소의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 (폐소 및 설립인가 취소<조변경 2015.09.01>)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를 상호 통합 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1. 평가결과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사업수주 목적으로 설립된 주제연구소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상세기준은 해당 연구소 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하며,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5.19, 2015.09.01)

③ 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의 폐소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09.01)

제9조(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5.09.01)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다음해 3월말까지(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0)

제1조(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9조 (회의)**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
 2. 예산 및 결산
 3. 규정 개정 발의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
2.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
3.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4.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제11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5 장 폐 소

제12조 (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고

제13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제 7 장 보 칙

제14조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00000 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